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8.

발 의 자 : 황정아 · 최민희 · 이주희
윤건영 · 주철현 · 허성무
장종태 · 박용갑 · 김우영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도체,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·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(SMR)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.

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%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2호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인공지능”을 “인공지능, 소형 모듈원자로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1) 중 “100분의 40”을 “100분의 45”로 하며, 같은 목 2)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35”로, “100분의 35”를 “100분의 4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·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“국가전략기술”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가.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

1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

경우: 100분의 40

2) 그 밖의 경우: 100분의

30(중소기업이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

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

-----인공
지능, 소형모듈원자로-----

가. -----

1) -----

-----100분의 45

2) -----100분의

35-----

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<u>100분의 35</u>) 나. (생략) 3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<u>100분의 40</u>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